



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

The Korean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

수신자 수신처 참조

(경유)

제 목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지회구축을 위한 PFA 및 SBIRT 교육지원 신청안내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, 실천하는 협회로서 전국 병·의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기관(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 등)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권익신장 및 전문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3. 본 지역에서 주민의 재난에 대한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지회구축을 위한 PFA 및 SBIRT 교육지원을 하고자 합니다. 이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협회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제 목 :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지회구축을 위한 PFA 및 SBIRT 교육지원 신청

나. 지원취지 : 대단위 비대면 교육을 지양하고 지역에서 보수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함으로써, 교육의 효율성과 지회의 자립을 제고하기 위함

다. 지원대상 : 지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3개 지역협회(※신청지회가 많을 경우 심사선정 예정)

라. 지원내용 : 교육운영비 지원, 전문강사 연계 및 기타 교육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

마. 지원금액 : 지회별 상이(보수교육비 * 교육신청자수에 따름)

※교육운영비 1,000,000원 선지원/ 추후 교육신청자 확정 후 최종 정산지급함

바. 제출기한 : 2022년 4월 8일(금)까지 협회메일(kamhsw@hanmail.net)으로 제출

※ 제출시 파일명 '재난심리회복지원교육사업(지회명)' 기재

사. 제출서류

- 1) 지회 제출공문 1부
- 2)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지회구축을 위한 PFA 및 SBIRT 교육지원 신청서 1부.
- 3)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지회구축을 위한 PFA 및 SBIRT 교육실시 계획서 1부.

아. 비교사항 : 지회 선정후 교육계획서,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양식 발송 예정.

붙임.

1.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지회구축을 위한 PFA 및 SBIRT 교육지원 신청서 1부.
2.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지회구축을 위한 PFA 및 SBIRT 교육실시 계획서 2부. 끝.

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



수신처 : 서울시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강원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경기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인천시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대전충청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대구경상북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전라북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광주전라남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부산울산경남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, 제주특별자치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

담당 안규아

부회장 박현숙

협회장 황정우

협조자 재난심리회복지원위원장 김미경

시행 한정사협(자) 22-041 (2022.03.22.) 접수

우 05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3, 거북이오피스텔 410호

/http://www.kamhsw.or.kr

전화 02-702-5638

전송 02-701-5632

/kamhsw@hanmail.net

/공개

붙임1.

2022년도 PFA 및 SBIRT 교육지원 지회별 신청서

기 본 정 보					
지회명 (지회장)		전 화			
		이메일			
교 부 신 청					
신 청 금 액	원 (단위: 원)				
입금계좌번호		예금주			
위와 같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PFA 및 SBIRT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 청 자 : (인)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귀하					

붙임2.

2022년도 PFA 및 SBIRT 교육지원 지회별 계획서

지회명

00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

1. 사업목적

□

2. 세부사업계획

(단위:천원)

사업명 (항/목)	세부사업명 (세목)	목표 (건/명)	소요 예산	추진계획내용 (일정,장소,내용 등)
				■ : ■ 장소 : ■ 내용 :
				■ 일시 : ■ 장소 : ■ 내용 :

※ 추진계획내용 : 사업 성격에 맞게 가감가능.

3. 예산

(단위:천원)

세입			세출		
세부사업명 (세목)	계	산출내역	세부사업명 (세목)	계	산출내역
합계					

4. 기대효과